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하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 및 생활규율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모든 피교육자(이하 "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의무소방원,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학습 및 생활수칙은 따로 정하고,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신입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중앙소방학교 신입교육과정 생활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수칙준수) 학생의 모든 활동은 교육훈련의 연장으로 보며 모든 행동은 본 수칙에 기준을 둔다.

제4조(학생대표 선출) ① 학생대표는 과정별로 선출하며 보조자 1명을 둘 수 있다.

② 학생대표는 계급·임용순위를 고려하여 해당 학급을 교육훈련 목적으로 지휘 통솔함에 타월한 학생 중에서 생활지도교수 지도하에 학생 자치적으로 선출한다.

제5조(지시이행) 학생은 생활지도교수(보조자 포함) 등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건의 및 허가·승인) ① 소방발전 및 교육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및 건의사항은 지휘계통을 통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건의할 수 있다.

② 각종 건의 및 허가·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그 사유서 및 증명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생활지도교수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 학생은 교내의 건물·수목·각종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조 또는 개조할 수 없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시설물 및 비품 파손 시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예절 및 복장

제8조(예절) 학생은 상·하급자를 막론하고 예절을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교수요원 및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그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스승으로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경례) 경례는 사복착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거수 경례 시 "안전"이라는 구호를 붙인다.

제10조(호칭) 학생은 각 상대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호칭한다.

1. 상급자에게 직명 또는 성과 계급 다음에 "님"을 붙인다.
2. 동급자 및 하급자에게 교번 또는 성명 다음에 "교육생"을 붙인다.

제11조(언어태도) ①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태도는 분명히 하되 상급자나 동급자에게는 경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의 교직원에 대한 경례, 호칭, 언어태도는 따로 구분함이 없이

상·하급자간의 예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실 출입)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을 금하며, 부득이 출입할 용무가 있을 시에는 입실 및 퇴실 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용모) 학생은 두발 등 용모를 단정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복장) ① 학생의 복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및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다.

② 교육기간 중에는 별표 1에 따른 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1998. 3. 30.>

제3장 일과 및 생활

제17조(일과표에 따른 생활) 학생의 일과는 별표 2의 일과표에 따라 규칙적으로 생활하여야 한다.

제18조(기상) ① 기상은 별표 2의 기상시간에 방송을 통해 기상신호를 발령한다.

② 기상신호가 발령되면 모든 학생은 침구 및 생활실을 정돈한 후 아침점호 및 학과 출장을 준비한다.

제19조(점호) ① 신입교육과정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활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② 전문·기본과정(신임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은 지정된 시간에 학생장이 실시한 후 이상유무를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한다. 다만, 교육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지도교수가 인원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점호지휘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학생대표가 실시하며 그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삭제

제20조(청소 및 정돈) ① 생활실 단위로 개인사물 정돈 및 생활실 내외와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한다.

- ② 생활실 별로 당번을 두어 생활실 내의 청소 및 정돈상태를 학과 출장 전 최종 점검한다.

제21조 삭제 <2002. 3. 6.>

제22조 삭제 <2002. 3. 6.>

제23조 삭제 <2002. 3. 6.>

제24조 삭제

제25조(학과출장) 학과개시 10분 전까지 질서있게 강의실 내에 완전히 입장하여 모든 학습준비를 완료한다.

제26조(수업태도) 수업태도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강의시간 중 무단이석, 잠담, 수면 등 불성실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 삭제 <1998. 3. 30.>

제28조(자유 시간) 자유 시간에는 면회, 세탁, 그 밖의 교내에서 허용된 자유로운 행동이 보장된다.

제29조 삭제

제30조(생활검열) ① 생활검열은 인원, 장비, 청소정돈 및 정신자세를 검열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② 생활검열의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열을 실시한다.

③ 생활검열 요령은 별표 4와 같으며 생활실내 소지품 등은 생활지도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돈하여야 한다.

제31조(취침 및 소등) ① 저녁점호가 끝나고 취침신호가 발령되면 소등하고 취침한다.

② 소등시간 이후에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은 생활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비상훈련) 학생의 비상출동태세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비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근무) ① 비상시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야간에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야간근무는 불침번 근무, 순찰근무, 비상근무로 나눈다.

제33조의2(근무 방법) ① 야간근무자는 경계담당구역 내의 도난·화재 등을 방지하고 그 밖의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히 경계, 감시하며 상황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합숙과정이 2개 과정 이상인 경우의 불침번 근무는 통합운영 할 수 있다.

제4장 근태관리

제34조(휴가) ① 휴가는 청원휴가(연가·병가), 특별휴가, 공가로 나눈다.

② 휴가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휴가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과 귀교 즉시 생활지도교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35조(외출·외박) ①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종료 후부터 22:30까지로 하고 외박의 경우는 다음 정기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일 오후수업 종료시부터 목요일 08:30까지로 하며,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08:30까지로 한다.

②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장·개인별로 외출·외박을 중지·허가하거나 시간을 제한·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재개발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외출·외박 시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노력한다.

제36조(면회) ① 면회는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면회 시에는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환자의 진료) 환자는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얻어 실시한다.

제38조 삭제

제39조(흡연 및 음주) ① 학생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② 교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와 시간 외에는 허가 없이 주류를 휴대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자료실 이용) ① 학생은 학습을 위하여 자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일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삭제 <1998. 3. 30.>

제41조 삭제

제42조(상담) ① 학생은 생활지도교수에게 학습 및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면담요청을 접수한 생활지도교수는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을 거쳐 보고한다.

제43조(생활평가) ① 생활지도부서에서는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에서 정한 생활평가 점수로 학생의 생활근태를 평가한다.

② 생활평가는 별표 6 생활평가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세항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적발된 일련의 행위가 별표 6의 위반내용에 각각 해당할 경우에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④ 가점의 항목 및 점수에 관한 사항 등 가점기준표는 별표 7과 같다.

제44조(퇴교) 생활지도교수는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4조의 직권

퇴교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도위원회에 의결을 상신하여야 한다.

제5장 지도위원회

제45조(기능)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 방안
2. 학생비행에 대한 제재
3. 퇴교허가
4.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의뢰한 사항

제46조(구성) ① 지도위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3명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은 학교 소속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재 시는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 임무를 수행한다.

④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지도교수로 한다.

제4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지도위를 대표하며 지도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8조(심의요구 및 의결) ①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거나 퇴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도

위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도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4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 _____ 찰(제15조 관련)

<신임이외의 교육과정>

과 정 명	
소속관서명	
교 번	성 명

재 질 : 아크릴판
제 식 : 과정별로 색상을
구분(7.5cm×4.5cm,)

생활일과표(제17조 관련)

구분	일 과	3월 ~ 10월	11월 ~ 익년2월
오전	기 상	06:00	06:30
	아침점호 및 심신단련	06:00~06:30	06:30~07:00
	청소 및 아침식사 등	06:30~08:00	07:00~08:00
	학과출장 준비	08:00~09:00	08:00~09:00
	오전수업	09:00~11:50	
오후	점심식사	12:00~13:00	
	오후수업	13:00~17:50	
	저녁식사	18:00~19:00	
	자유시간	19:00~22:30	
	저녁점호	22:30~23:00	
	취침 및 소등	23:00~	

점 호 요 령(제19조 관련)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한다.

1. 아침점호

아침점호는 기상신호가 나면 신속한 동작으로 침구를 정돈하고 용모, 복장을 갖춘 다음 점호장에 집합한다.

가. 학생대표는 전체 학생을 정렬시키고 인원, 용모, 복장을 점검한 후 생활지도교수 또는 보조자에게 경례한 후 다음과 같이 인원보고를 한다.

<보고요령>

"○○반 아침점호 인원보고 총원 ○○명 사고 ○○명 현재원 ○○명 사고내용 ○○점호준비 끝"

나. 생활지도교수 또는 보조자는 점호실시를 알린다.

다. 생활지도교수 또는 보조자의 구령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체조 등을 실시한다.

라. 생활지도교수 또는 보조자가 구보실시를 명하면 학생대표는 복창 후 인솔한다.

2. 저녁점호

저녁점호는 점호시간 20분 전의 예고에 각 생활실 별로 준비를 완료하고 각자 위치에 정렬한다.

가. 학생대표는 점호 3분 전에 각 생활실 점호정렬을 지시한다.

나. 학생대표는 생활지도교수 또는 보조자가 점호를 위하여 위치하면 "전체차렷"을 구령한 다음 생활지도교수 또는 보조자에게 경례한 후 다음과 같이 인원보고를 한다.

"○○반 저녁점호 인원보고 총원 ○○명 사고 ○○명 현재원 ○○명 사고내용 ○○점호준비 끝"이라고 보고하고 점호를 받지 않은 반은 "열중쉬어"라고 지시한다.

다. 생활지도교수 또는 보조자가 생활실별 점호를 시작하면 학생대표는 다음 생활실로 이동하면서 "전체차렷"으로 지시한다. 점호가 끝난 생활실은 생활지도교수 또는 보조자가 "열중쉬어" 지시한다.

라. 점호가 끝나면 생활지도교수 또는 보조자는 점호 끝을 알린다.

3. 비상점호

비상점호는 인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점호관이 상황에 따라 취한다. 단, 생활지도교수 또는 보조자는 학생대표에게 점호실시를 명할 수 있다.

생활검열 요령(제30조 관련)

1. 생활검열

생활검열은 생활지도교수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2. 장 소 : 생활실 및 담당청소구역

3. 검열준비

검열준비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가. 각 생활실 단위로 저녁점호 대형으로 정렬한다.

나. 청소정돈을 철저히 한다.

다.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한다.

4. 검열실시

가. 검열은 일상 저녁점호 요령에 준한다.

나. 필요에 따라 특정 생활실을 지정하여 특별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다. 검열결과 성적이 불량하면 재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휴가 및 방학 등의 구분(제34조 관련)

구분	요건	기간	제출서류	비고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특별 휴가의 내용에 준하되, 필요시 제한할 수 있다. ○ 경조사휴가 - 결혼 : 본인 - 출산 : 배우자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입양 : 본인 ○ 여성보건휴가 ○ 재해구호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기간을 준용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관련 증명서류 등	학생수칙 제43조에 따른 생활 평가 시 감점 제외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공가의 내용에 준하되, 필요시 제한할 수 있다.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참석하는 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 정한 기간을 준용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관련 증명서류 등	학생수칙 제43조에 따른 생활 평가 시 감점 제외
청원휴가(연·병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인재개발과장의 승인하에 실시	교육기간을 고려하여 별도지정	관련 증명서류	환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작성
공무상요양	학교 수업 또는 훈련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관련 증명서류 등	학생수칙 제43조에 따른 생활평가시 감점 제외

생활평가 기준(제43조 관련)

번호	항 목	세 항	세부 구분	감 점	비 고
1	입교	1. 입교시간 위반	1시간당 (1일)	2 (20)	
		2. 지시사항 위반	1회	3	
2	수업	1. 무단결강	1시간당 (1일)	10 (30)	제24조, 제26조에 해당하는 특별 휴가 및 청원휴가 시 감점하지 않 는다.
		2. 승인결강	시간당	1	
		3. 수업시간 위반	20분 이내	2	
		4. 태도불량	1회	2	
		5. 분위기 저해	1회	5	
3	외출·외박	1. 무단외박	1회	30	외출·외박 구분 : 당일24시 기준
		2. 무단외출	1시간당 (1일)	10 (최대 30)	
		3. 승인 외출·외박 귀교시간 위반	1시간당 (1일)	2 (최대 10)	
		4. 비합숙과정 등교시간 위반	1시간당	3	
4	평가	1. 시험태도 불량	1회	10	
		2. 부정행위 자료소지	1회	20	
5	점호	1. 무단점호 불참	1회	10	
		2. 점호태도 불량	1회	5	
		3. 취침 방해	1회	5	
6	청소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불량	1회	2	
7	근무	1. 근무결락	1회	5	
		2. 근무장소 이탈	1회	3	
		3. 근무태만·시간위반	1회	2	
8	예절 및 품위	1. 폭력, 성비위 등 명예훼손, 품위손상	1회	30~퇴교	
		2. 사행성 행위	1회	30~퇴교	
		3. 교수요원 모욕	1회	30	
		4. 위계질서문란, 싸움, 욕설 등 소란행위	1회	20~퇴교	
		5. 교직원 등 결례	1회	20	
		6. 용모복장 불량	1회	3	
9	시설물관리	시설물 파손	1회	20	
10	허위신고 및 보고	1. 허위신고 및 보고	1회	10	
		2. 보고지연 및 누락	1회	5	
11	음주행위 등	1. 음주운전	1회	퇴교	
		2. 음주추태	1회	30	
		3. 지정장소·시간 외 음주 및 반입금지 음식물 반입	1회	20	
12	기타	1. 도박행위	1회	30	
		2. 지시사항 위반, 흡연구역 외 흡연행위, 무단 전열기 사용	1회	5	
		3. 일과시간 위반	1회	3	
		4. 자율학습 분위기 저해	1회	3	
		5. 교내 주차구역 위반	1회	3	

가점기준표

항 목	점 수	비 고
1. 학생대표 및 보조자	10	별점 및 기준횟수 상계
2. 선행 등 대외적 명예 고양	10	
3. 화재예방유공	5	
4. 응급환자 조치	5	
5. 타의 모범활동	5	
6. 분임토의 우수	5	
7. 모범생활실 및 환경미화 솔선	3	
8. 그 밖의 선행	2	

※ 분기별 총 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심 의 의 결 서

심의대상자 인 적 사 항	성 명		과 정		교 번	
	생년월일		소 속			
	주 소					
의 결 주 문						
적 용 규 정						
이 유						
20 . . . 지도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 신 청 서

		결재	생활지도교수	인재개발과장		
과정	과정	계급				
소속관서		교번		성명		
행선지		연락처 (전화)				
사유						
기간						
위와 같이 0000을(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서명)						